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요청인 대표	성명	생년월일(여권·외국인등록 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
	※ 요청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인에 대한 사항은 뒤쪽에 작성합니다.	

정보공개 내용	공개요청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그 밖의 방법()
	공개요청 사유	
	공개정보 사용목적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그 밖의 방법()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등의 안전정보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행정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첨부서류	1.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2. 수수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증

접수번호	요청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illegible]

안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